201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2014. 6. 13.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국민연금공단

I.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개요

□ 보고 배경

○ 2013년도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성과급지급률**에 대한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제3조제3항제2호

□ 성과급 지급 요건(최소기준)

○ 기금운용본부(이하 "운용본부"라 함)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과급 지급

□ 성과급 구성*

* 성과급 지급률 산정체계는 [설명자료1] 참고

○ **'목표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최대** 성과급 지급 비율은 운용본부 전체 **기본급의 100%**까지로 함

	목표성과급	초과이익성과급
개요	운용본부 전체성과에 따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	자산군별로 목표수준 (목표 초과수익률) 이상의 추가적 재무성과에 대한 보상
지급 대상	모든 직군	운용직군 및 운용본부장
성과급 규모 (재원)	운용본부 기본급 총합 × 60% × 3개년 가중 운용본부 성과지수	자산별 기본급 총합 × 목표 초과달성률 × 80%

II.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달성 여부

□ 3년('11년~'13년) 평균 운용수익률(4.48%)*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49%)**을 초과하였으므로 성과급 지급

* (기금 수익률) '11년: 2.31%, '12년: 7.03%, '13년: 4.16%

** (소비자물가상승률) '11년: 4.00%, '12년: 2.19%, '13년: 1.31% (출처: 한국은행)

Ⅲ. 성과급 산정

□ 목표성과급

목표성과급=운용본부 기본급 총합×60%×3개년 가중 운용본부 성과지수

○ 운용본부 기본급 총합: 10,453백만원

○ 3개년 가중 운용본부 성과지수: 33.9

[3개년 가중 운용본부 성과지수 도출 방법]

▸ **연도별 성과지수를 도출**하고, 당해(50%), 전년(30%), 전전년(20%) 지수 **가중 합산**

- **연도별 성과지수**(100점 만점)는 **정량평가**(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로 평가) **80%**, **정성평가**(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에서 평가) **20%**로 구성

구 분	성과지수(A)	장기평가 비중(B)	A × B
'11년	16.8	20%	3.4
'12년	32.4	30%	9.7
'13년	41.6	50%	20.8
3개년가중 성과지수	-	-	33.9

* '13년도 성과지수 산정 내역은 [설명자료2] 참조

○ **'13년도 운용본부 목표성과급은 2,125백만원(기본급 총합의 20.3%)**

- **개인별 목표성과급**은 소속팀의 성과, 개인성과 및 개인 성과급 목표에 의해 총액 내에서 **차등 지급**

- **운용본부장의 목표성과급**은 본부장 기본급의 23.7%*

* 운용본부장 기본급×70%×3개년 가중 운용본부성과지수(33.9)

□ 초과이익성과급: 지급대상 없음

초과이익성과급=자산별 기본급 총합×3개년 가중 목표 초과달성률×80%
(※ 목표 초과달성률의 최대치는 50%)

○ 3개년 가중 목표 초과달성률이 양(+)인 자산군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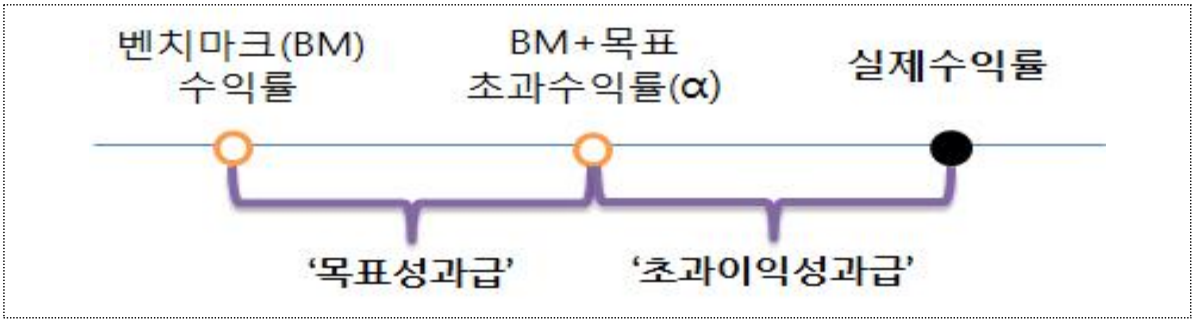
* '13년도 목표 초과달성률 산정 내역은 [설명자료3] 참조

설명자료1 | **성과급 지급률 산정체계**

□ 산정 개요

○ (성과급 지급 **최소 기준**) **3년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 (**성과급 구성**) '목표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으로 구성



- (**목표성과급**) **3개년도 가중 성과지수***(정량평가, 80%) 및 정책제언 **과제이행도****(정성평가, 20%)에 따라 결정하여 **전 직군**에 지급

  * 금융전체 및 자산군별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의 3년 가중평균값 (50:30:20)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가 부여한 기금운용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수행도

- (**초과이익성과급**) 3개년 가중 **목표 α를 초과달성*한 경우**에 해당 **자산군별 운용직** 및 **운용본부장**에 지급

  * 금융전체 및 자산군별 목표 α 달성률의 3년 가중평균값 (50:30:20)
    - 기금 전체 20%, 각 자산군 80%로 가중평균

  * 목표초과달성률의 최대치는 50%

□ 산정 주체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설명자료2 '13년도 성과지수 산정 내역

□ '13년도 성과지수(41.6) = 정량평가(25.4) + 정성평가(16.2)

□ 정량평가(25.4점)

< '13년도 정량평가 점수 >

(단위 : %, %p)

구 분		평가 비중	수익률 (A)	BM (B)	초과 (A-B)	목표 알파	목표 달성률[주1]	목표 달성도[주2]	성과지수[주3]
정량평가	금융부문계	40	4.16	4.02	0.14	0.38	36.1	36.1	14.4
	전술적 자산배분	10	-0.11	0.00	-0.11	0.05	-223.3	0.0	0.0
	국내주식	10	2.65	1.88	0.77	1.40	55.2	55.2	5.5
	국내채권	10	2.10	2.07	0.03	0.06	54.5	54.5	5.5
	해외주식	5	21.61	22.00	-0.39	1.42	-27.6	0.0	0.0
	해외채권	5	0.39	2.01	-1.62	0.38	-425.9	0.0	0.0
	합계	**80**							**25.4**

주1) 목표달성률 = (수익률 - BM)/목표알파
주2) 0 ≤ 목표달성도 ≤ 100
주3) 성과지수 = Σ (평가항목별 평가비중 × 목표달성도)
주4) 반올림에 의한 단수 차이 있음

□ 정성평가(16.2점)

○ '13년도 과제*별 평균점수(81.0) × 정성평가 비중(20%) = 16.2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성과평가 결과 및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정성평가과제 **설정 및 평가**

<'13년도 정성평가 과제 및 점수>

정성평가 과제	과제별 점수
1. 국내채권 및 주식투자에 있어서 제약요인을 고려한 운용방안 마련	76.2
2. 대체투자 관련 개선방안 마련	79.0
3. 해외투자 다변화 방안	82.5
4. 외환관리 시스템 개선	88.9
5. 기금운용 성과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방안 연구	76.7
6. 기금운용 인력보강 및 전문성 제고	82.8
평 균	**81.0**

설명자료3 | **'13년도 목표초과달성률 산정 내역**

□ 2013년 목표초과수익률(목표 α) 결정방법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 전체의 목표 α를 의결**('12.9.24)하면 **공단이 자산군별 목표 α를 배분**하여 기금위에 **보고**('12.12.17)

○ 2013년도 기금전체 목표 **α는 0.38%**

-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1.40%, 해외주식 1.42%, 국내채권 0.06%, 해외채권 0.38%, 전술적자산배분(TAA) 0.05%

□ 목표초과달성률 산정 방법

○ **'기금전체 수익률의 목표 α 초과달성률'과 '개별자산 수익률의 목표 α 초과달성률'의 가중* 합산**

* ('11년도 이전) 직접운용: 기금전체 20%, 개별자산 80%
  위탁운용: 기금전체 40%, 개별자산 60%
* ('12년도 이후) 기금전체 20%, 개별자산 80%

□ 자산군별 목표초과달성률

(단위 : %, %p)

구 분	수익률		개별자산 목표초과달성율				최종 목표초과달성률		
	개별자산	BM	실제알파	목표알파	초과알파	초과달성율[1]	기금전체	개별자산	최종(가중)
	A	B	C (=B-A)	D	E (=C-D)	F (=E/D)	G	F	H (=0.2G +0.8F)
국내주식	2.65	1.88	0.77	1.40	△0.63	△44.8	△63.9%[2]	△44.8	△48.6
국내채권	2.10	2.07	0.03	0.06	△0.03	△45.5		△45.5	△49.2
해외주식	21.61	22.00	△0.39	1.42	△1.81	△127.6		△127.6	△114.9
해외채권	0.39	2.01	△1.62	0.38	△2.00	△525.9		△525.9	△433.5
대체투자[3]	N/A							N/A	△63.9
전술적 자산배분[4]	△0.11	0.00	△0.11	0.05	△0.16	△323.3		△323.3	△271.4

주1) 초과 달성율 = (실제알파값 - 목표알파값)/(목표알파값)

주2) 기금전체 목표 초과 달성율 = (실제알파값 - 목표알파값)/(목표알파값) = (0.14 - 0.38)/0.38 = △63.9%

주3) 대체투자의 경우 개별자산군의 수익률을 적용할 수 없어 기금전체목표 초과달성률을 100%적용

주4) 반올림에 의한 단수 차이 있음

□ 3개년 가중 목표초과달성률

○ **장기성과의 반영**을 위해 당해연도 성과(50%), 전년도 성과(30%), 전전년도 성과(20%)를 **가중 합산**

구 분		'11년 (20%)	'12년 (30%)	'13년 (50%)	3개년 가중 목표초과 달성률
국내 주식	직접운용	△117.6	△142.4	△48.6	**△90.5**
	위탁운용	△112.2	△142.4	△48.6	**△89.5**
국내 채권	직접운용	△134.2	△259.8	△49.2	**△129.3**
	위탁운용	△124.6	△259.8	△49.2	**△127.4**
해외 주식	직접운용	△167.7	△86.7	△114.9	**△117.0**
	위탁운용	△149.8	△86.7	△114.9	**△113.4**
해외 채권	직접운용	△334.7	140.5	△433.5	**△241.5**
	위탁운용	△275.0	140.5	△433.5	**△229.6**
대체투자		△96.0	△181.3	△63.9	**△105.5**
전술적자산배분		△255.9	70.4	△271.4	**△165.8**
기금전체		**△96.0**	**△181.3**	**△63.9**	**△105.5**

참고자료1 |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률 및 성과급 현황**

□ 초과수익 달성현황

(단위 : %, %p)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실현수익률(R)	10.84	10.57	2.32	7.03	**4.16**
BM 수익률(M)	12.62	10.97	2.30	7.36	**4.02**
초과수익률(R-M)	-1.78	-0.40	0.02	-0.33	**0.14**

□ 성과급 지급률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평가대상 (전년도 실적)	'11년도 기금운용 실적	'12년도 기금운용 실적	**'13년도 기금운용 실적**
목표성과급 지급률	9.1%	16.3%	**20.3%**
초과이익성과급 지급률	대상없음	대상없음	**대상없음**

□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천원)

대 상		인 원	지급액	1인당 평균 지급액	전체기본급 대비 지급률
'12	계	103	627,804	6,095	9.1%
	목표	103	627,804	6,095	9.1%
'13	계	118	1,298,187	11,002	16.3%
	목표	118	1,298,187	11,002	16.3%
'14	**계**	**152**	**2,124,986**	**13,980**	**20.3%**
	목표	**152**	**2,124,986**	**13,980**	**20.3%**

참고자료2 **성과평가보상지침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12.2.27. 기금위 의결)

□ **적용시기** : '12년도 귀속 성과급을 지급하는 '13년 지급부터 적용

□ **목표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 비중 조정**

○ **(내용)** 현행 대비 **목표성과급 지급 비중 확대, 초과이익성과급 지급 비중 축소**

구분	기존	개정
목표성과급 지급 비중	40%	**60%**
초과이익성과급 지급 비중	60%	**40%**

○ **(목적) 기금 전체성과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목표성과급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기금본부 **전체구성원의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 제고

□ 초과이익성과급의 **목표초과달성률 산출 방법 조정**

○ **(내용)** 목표초과달성률 산출시 직접·간접운용직간 **성과 반영 기준을 통일하여** 간접운용직의 **개별자산 성과 반영 비율 확대**

구 분	기존		개정	
	기금전체 초과 수익률 비중	개별자산 초과 수익률 비중	**기금전체 초과 수익률 비중**	**개별자산 초과 수익률 비중**
직접운용직	20%	80%	20%	80%
간접운용직	40%	60%		

○ **(목적) 초과수익률**에 대한 성과 **반영 비중의 통일**로 **직접·간접 운용직의 조직기여도를 인정**하고 **성과배분의 형평성을 제고**